

황현아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요 약

- 21대 국회에서는 5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 심사 중임
 - 개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사항* 및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① 자료제공 요청권, ②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③ 보험금 환수권
 - **④ 보험사기 유인행위 제재, ⑤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⑥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양형기준 변경을 통한 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징역 10년)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 직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할 경우 과잉처벌 문제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보험사기죄 선고형 현황을 보면 대부분 3년 미만의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바, 양형기준을 변경하여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환수권)** 보험금 환수권 및 이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보험금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소멸시효(5년) 도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함
 -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환수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효기간(예: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시로부터 3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 유인행위)**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재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를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처벌 대상 행위의 의미(특히 “권유” 행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안이 경미하거나 유인 글을 게시한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및 게시물 삭제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사무장병원 등 보험금 환수)** 사무장병원 등에 지급된 보험금 환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으나, 민영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자배법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약관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보험금 지급 및 진료사실 증명의 전제 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검토 배경

○ 21대 국회에서는 5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 심사 중임

- 개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및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① 자료제공 요청권, ②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③ 보험금 환수권 등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¹⁾
 - ④ 보험사기 유인행위 제재, ⑤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⑥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및 ⑦ 기타 사항(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보험사기 방지기금 설치, 수사기관 통보 사실 누설금지,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 등) 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음

〈표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구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 항목
1	2101190	이주환 의원	① 자료제공 요청권, ②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 ③ 보험금 환수권
2	2102553	윤창현 의원	②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 ③ 보험금 환수권
3	2106276	홍성국 의원	① 자료제공 요청권, ②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 ⑦ 기타(보험사기 조사 절차, 보험사기 보고·검사,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4	2106861	김한정 의원	① 자료제공 요청권, ②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 ③ 보험금 환수권 , ④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 , ⑤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⑦ 기타(보험사기 전담 조직 마련, 수사기관 통보 사실 누설금지)
5	2114398	윤관석 의원	① 자료제공 요청권, ②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 ③ 보험금 환수권 , ④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 처벌 , ⑤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⑥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 ⑦ 기타(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보험사기 방지기금 설치)

주: 본고의 검토 대상 항목을 굵은 글씨로 표시함

○ 본고에서는 (i)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ii) 보험금 환수권, (iii) 보험사기 유인행위 제재(알선·광고 금지/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 처벌), (iv)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함²⁾

1) 20대 국회에서는 8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2) 참고로 ① 자료제공 요청권도 중요 항목 중 하나이나 이에 관해서는 기존 보고서(황현아(20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KIRI 보험법리뷰』)에서 검토하였고, ⑤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관련 쟁점(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되며, ⑦ 기타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법적 측면보다는 정책적·실무적 측면의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상의 항목들은 본고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2.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 보험업 종사자 등³⁾의 가담으로 보험사기가 조직화·기능화되는 경향이 있어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으며,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5건 모두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가중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안은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1/2 가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 임직원을 포함시킬지 여부⁵⁾ 및 벌금형만 가중할 것인지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가중할 것인지⁶⁾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안마다 상이함
-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무부는 법정형 상향보다는 재판 시 양형을 통해 처벌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⁷⁾

○ 보험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 직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할 경우 과잉처벌 문제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처벌 수위도 원칙적으로 사기죄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⁸⁾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⁹⁾ 및 경합범 가중처벌¹⁰⁾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법정형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할 경우, 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고,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¹¹⁾
- 한편, 보험업 종사자 등이 경미하게 가담하고 보험계약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나 보험업 종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경우¹²⁾ 등 일률적 처벌 강화가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3) “보험업 종사자 등”이란, (i) 보험업 종사자(보험회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손해사정사(대리점, 중개사, 손해사정사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함)), (ii)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iii)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원을 의미함

4) 김진태 의원 안(의안번호 2020480), 김관영 의원 안(의안번호 2004492)

5) 이주환 의원 안 및 윤관석 의원 안은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나머지 법안들은 포함하지 않음

6) 이주환 의원 안 및 김한정 의원 안은 벌금형만 가중하고 있으나, 나머지 법안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가중하고 있음

7) 정무위원회(2020. 9), “〈보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 ▣ 이주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0호)”, p. 9

8)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형법 제347조)

9) 보험사기에 의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함(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10) 보험사기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더 중한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됨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 방화죄(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164조)) 등

11) 참고로, 최근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의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1. 11. 25. 자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결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임

○ 보험사기죄 선고형 현황을 보면 대부분 3년 미만의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바, 양형기준을 변경하여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7년~2020년 보험사기죄 관련 형사재판(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표 2〉의 처벌 현황은 보험사기죄 및 관련된 다른 범죄까지 모두 고려한 것인바,¹³⁾ 보험사기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표 2〉에서 나타난 것보다 낮다고 볼 수 있음¹⁴⁾
- 이처럼 보험사기죄에 대한 선고형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는바, 보험업 종사자 등에 해당할 경우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조직적 사기인지 여부, 이득액, 행위 및 행위자 관련 요인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고, 보험사기단에 의한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여 일반사기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보험업 종사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은 별도의 가중사유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¹⁵⁾

〈표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1심) 처벌 현황

(단위: 명)

연도	접수	처리	처리 건수(인원)										기타 ^{주)}	
			징역형(형량별)					징역형 집행 유예	벌금형(금액별)			벌금형 집행 유예		
			합계	부정기	1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합계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2017년	228	126	27	-	12	10	4	36	43	29	7	7	-	20
2018년	862	576	101	2	38	53	8	145	258	134	73	51	4	68
2019년	1,023	852	187	-	92	76	19	292	295	139	95	61	2	76
2020년	1,827	1,310	310	2	123	151	34	393	459	252	100	107	18	130

주: 기타에는 무죄, 선고유예, 면소,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사형(2018년 1건) 등이 포함됨
 자료: 대법원

- 12) 현재 개정안은 보험업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i) 의료인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자동차사고 대물피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인지, (ii) 전직 보험설계사(특히 일시적으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와 현직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처벌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정당인지 등 실무상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13) 보험사기죄의 경우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방화, 살인 등 다른 범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관련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형을 선고할 때에도 관련된 모든 범죄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14) 참고로, 〈표 2〉의 형사재판 1심 처리 건수(인원)는 금감원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인원)(2019년 92,538명, 2020년 98,826명)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i) 보험사기 사건 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 9.)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집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ii)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iii) 비교적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이 선고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죄로 입건된 자는 13,074명이 고, 이중 10,567명이 기소되었음(출처: 2020년 경찰청 통계연보). 한편,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매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즉,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참고(https://sc.scourt.go.kr/sc/krc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구체적인 양형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검토가 요구됨



3. 보험금 환수권 및 소멸시효

-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의 확실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¹⁶⁾
 - 이에 4건의 개정안에서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¹⁷⁾

- 한편, 최근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최근 대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드러나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함¹⁸⁾
 - 보험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위 판례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실제로 위 판결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환수 청구를 기각하였음¹⁹⁾
 -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보험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²⁰⁾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임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인바(민법 제766조), 위 하급심 판례에서는 10년의 시효를 적용하였으나 3년의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여 보험금 환수 청구를 하더라도 시효 완성에 의한 보험금 환수 곤란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16)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성립 요건이 다르고, 소멸시효 기간 등 권리 존속 요건도 상이함

17)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 등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18)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판결

19)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21가단5013106 판결

불법적 이익은 박탈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보험사기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보험사기 적발 유인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명문의 환수권 규정을 도입하고, 환수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멸시효 기간(예: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4. 보험사기 유인행위 제재

- 최근 SNS를 통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사기 유인행위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객 일당 지급’ 등 일자리 광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²¹⁾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여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는 사례²²⁾ 등이 문제 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회 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험사기 유인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방안이 요구됨
- 보험사기 유인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i)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ii)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를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 김한정 의원 안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윤관석 의원 안은 보험사기행위를 유인·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한편, 보험사기행위를 유인·알선·권유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인·알선·권유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되었음²³⁾
- 보험사기 유인행위를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처벌 대상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 유인행위를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액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는바, 처벌 대상 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유”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단순 예비·음모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음

2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5. 19),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급전 필요한 분, 고객 일당 지급 등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주의!”

2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1. 26),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23) 윤관석 의원 안 제5조의 2 및 제5조의 3; 김한정 의원 안은 보험사기 알선·광고의 경우 금융위가 방통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김한정 의원 안 제7조의2)

- 개정안(윤관석 의원 안)은 유인, 알선, 권유를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의 사례를 보면 유인, 알선, 권유를 구별하여 정하고 처벌 수위도 달리하고 있음²⁴⁾
 - 예컨대, (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알선”과 “유인·권유”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후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ii)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 부정취득 “알선”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유인·권유”는 처벌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iii)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과 “광고”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알선·광고 대상 행위인 의약품 불법판매의 처벌 수위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러한 타 법령 사례들을 보면,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처벌 대상 행위를 명확화·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유인·알선·권유를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유인·알선·권유의 의미를 명확화·세분화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기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 유인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엄격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므로, 보험사기 유인행위에 대해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SNS에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올렸으나 구체적인 보험사기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 질서별로 규율하고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임

5.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 사무장병원 등²⁵⁾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24) 타 법령상 유인, 알선, 권유 행위 처벌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법령	금지행위 내용 및 처벌 수위			관련 유인·알선·권유 행위 내용 및 처벌 수위		
	조문	내용	처벌 수위	조문	내용	처벌 수위
약사법	제44조 제93조	의약품 불법판매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61조의2 제95조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개인정보 부정취득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제70조	개인정보 부정취득 교사·알선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년~10년 징역 2천만 원~5천만 원 벌금	제15조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7년 이상 징역*
				제15조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인·권유	7년 이하 징역**

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② 그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③ 그 밖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자는, ②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③ 영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함

25) 이하 “사무장병원 등”은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이중개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함. (i)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보험금(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으나, 민영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무장병원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대법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의 취지(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상 위험 방지)를 고려할 때 진료 자체가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²⁶⁾
- 반면,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이 민간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라 함)를 청구하는 행위는 진료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금 환수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의료기관의 자보수가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보수가 지급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²⁷⁾
 - 또한 사무장병원이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 증명 등을 발급해 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손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²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ii) “명의대여”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iii) “이중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의미함

- 26)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함
- 27)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등; 대법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의 인정 근거, 범위 및 성격에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 등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피해자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 28)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 증명 등을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이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음(부산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20나50785 판결(상고 미제기로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8가합525212 판결(항소 미제기로 확정됨) 등)

-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일 것이 요구되나, 자보수가 및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임

○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규정의 논리성 및 체계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윤관석 의원 안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사무장병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의료기관 및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보험금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개정안 제11조의2)
-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자보수가 지급 청구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도록 할 경우, 논리성 및 체계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대법원이 사무장병원 등의 자보수가 청구 및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진료사실 증명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 될 수 있는 것임

○ 사무장병원 등에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자보수가 청구 및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진료사실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무장병원 등을 금지하는 취지인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국민의 건강상 위험 방지’는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임
 -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성 및 이들 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 규모²⁹⁾를 고려할 때,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국민의 건강상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금지하고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자보수가 및 실손의료보험금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질 것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자보수가 지급 청구 및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진료사실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³⁰⁾
 - 다만,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실손의료보험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의료기관 불법 개설에 따른 보험금 환수나 지급 거절은 불법 개설된 당해 의료기관 및 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없도록 해야 할 것임³¹⁾

29)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2,364만 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3,496만 건으로 국민 상당수가 이들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또한 2020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는 2.3조 원,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11.8조 원으로 이들 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 규모도 상당함(출처: 금융감독원(2021. 4. 28),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 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 6), “2020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참고로, 2020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5,139만 명,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86.6조 원임(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 6),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

30) 구체적인 개정 방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일응 자배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또는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를 개정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자보수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1) 자동차보험에서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무장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고의사고의 경우와 유사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실시하되 사무장병원 등을 상대로 그 보험금(자보수가)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보험금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